

거창여자고등학교 기간제 교육공무직원(조리실무사) 채용 공고

※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,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1.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

직종명 (채용사유)	채용인원	담당업무	비고
조리실무사 (한시적 기간제)	1명	○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, 청소 ○ 영양사의 지시사항 이행 및 조리사 업무 보조 ○ 기타 학교장이 분장하는 업무	

2. 근로조건 및 보수 등

가. 근로계약기간: 2024. 3. 1. ~ 2024. 3. 31. (1개월간)

※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됩니다.

나. 근로일: 월요일~금요일

다. 근로시간: 10:00~14:30 (휴게시간: 12:00~12:30)

※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함

마. 휴일 및 휴가: 「근로기준법」, 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 및 단체협약에 따름

바. 근무장소: 거창여자고등학교 급식소

사. 보수 등 처우: 매년 교육공무직 임금 지급기준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

- 지급형태: 월급제

※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- 4대 보험 가입(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)

-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「경상남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 따름

3. 응시자격

가. 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 제8조(신규채용제한) 및 제5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관련 법령

❖ 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 (2021. 4. 10.)

제8조(신규채용제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
6.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
7.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
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9.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
10. 경력 또는 학력,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
11.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
제54조(정년)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- ※ 청소년 및 당직전담사의 경우 정년은 만 65세이며, 정년 만료 후 기간제근로자 촉탁계약 가능
- ※ 2회 공고절차(공고 및 재공고)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 초과자 채용 가능(단, 1년 초과하여 채용 불가)
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

관련 법령

❖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
4. 채용기준 및 방법

가. 채용기준

-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(서류심사)에 결격사유가 없고, 2차 면접에 합격한 자

나. 채용(시험) 방법

- 1차 : 서류심사
- 2차 : 면접 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)
- 최종 합격자 통보 :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

5. 제출서류

1차 접수 시 제출서류	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원서 [별첨 1] ○ 경력증명서(해당자) ○ 자격증 사본(해당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등록등본 ○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○ 공정채용확인서 [별첨 2]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별첨 3] ○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[별첨 4] 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[별첨 5] ○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[별첨 6] ○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[별첨 7] 	각1부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: 2024. 2. 20.(화) 10:00 ~ 2. 27.(화) 10:00 (주말 제외, 평일 9:00~16:00 접수)

나. 접수장소: 거창여자고등학교 행정실

다. 접수방법: 본인 직접 방문

※ 대리접수 불가능

라.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

마. 서류심사결과 발표 : 2024. 2. 27.(화) 11:00 -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

바. 면접일시: 2024. 2. 27.(화) 14:00 -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

7. 채용서류 반환

- 가.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
- 나.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
- 다.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
- 라. 반환기한: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
- 마. 채용서류 파기: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
- 바. 기타: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사.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

8. 유의사항 및 기타

- 가.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,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)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.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청구 할 수 있으며,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.
 -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
- 다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(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)하여야 합니다.
- 라.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·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·임용이 취소됩니다.
- 마.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.
- 바.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.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행정실(☎055-942-3910), 업무 내용 관련 문의 사항은 급식소(055-942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학교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·읍 죽전1길 72(거창여자고등학교) 행정실

2024. 2. 20.

거창여자고등학교장